<2026 박문각 주택관리사 기본서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_정오표4>

	수정 전	수정 후
P. 127 (2) 종 류	단지형 연립주택 | 연립주택. 다만,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 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단지형 다세대주택 | 다세대주택. 다만,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 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5개 층**	제1종전용주거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은 5개 층, 그 외는 6개 층
P. 127 날개 OX	OX 단지형 연립주택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5층 이상도 건축할 수 있다. (×) **5층 이상도**	**4층 까지만**
P. 151 2. 예 외	1. … 경우에는 95% 이상의 소유권을 …	1. … 경우에는 **80**% 이상의 소유권을 …
P. 172 3.	(1) 주택단지에는 …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	(1) 주택단지에는 … 기준으로 하여 **규정**에서 정하는 …
P. 173 3.	(2) 도시형 … 층수를 5개 층까지 건축하는 …	(2) 도시형 … 층수를 5개 층 **또는 6개 층**까지 건축하는 …
P. 241 (7)	**교육기간은 3일로** 한다. ….	**교육시간은 24시간으로** 한다. ….
P. 398 1. 통 지 박스 내용 전부 교체	1. 시설물이 붕괴되거나 쓰러지는 등의 시설물피해 2. 사망자 또는 실종자가 1명 이상이거나 부상자가 5명 이상인 인명피해	
P. 398 3. (1) 내용 전부 교체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시설물의 사고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 · 운영할 수 있다. 1. 시설물이 붕괴되거나 쓰러지는 등의 시설물피해 2. 사망자 또는 실종자가 1명 이상이거나 부상자가 10명 이상인 인명피해	